20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3 |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2023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목 차

0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단소개 08
2023 예술인복지사업 개요 10
예술인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조건
예술활동증명 13

02 2023 예술인 복지사업 상세안내

예술인 신문고 18
예술인조합 신고 접수 23
서면계약 위반신고 24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25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26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29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32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34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운영 37
예술인 의료비 지원 40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43
창작준비금지원 - 창작디딤돌 및 창작씨앗 44
예술인파견지원 - 예술로 46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52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53
예술인패스 57
[별첨] 예술활동증명 세부 기준 및 운영지침 58

2023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단소개 08
2023 예술인복지사업 개요 10
예술인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조건
예술활동증명 1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Artists + Welfare = AW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벌마크는 행복한 예술인의 웃는 표정을 의미합니다.
예술인(Artists)과 복지(Welfare)의 머리글자 AW를 형상화했습니 다.

미션 /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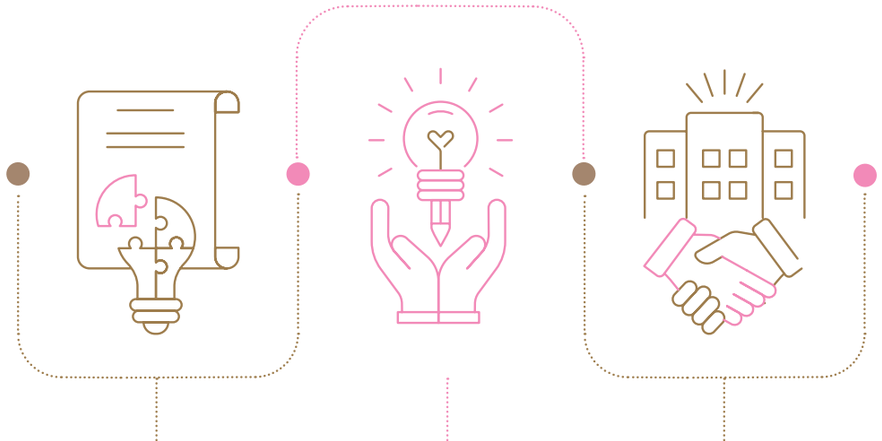

미션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지원으로 예술 발전에 이바지

비전
따뜻한 복지지원, 든든한 권리보장, 행복한 예술인

슬로건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전략목표

1 **안정·자립**의 **예술활동** 기반 구축

2 예술인의 **인권 및 사회적 권익** 향상

3 지속가능한 **예술인 성장환경** 조성

4 신뢰·공감의 **선진경영체계** 확립

핵심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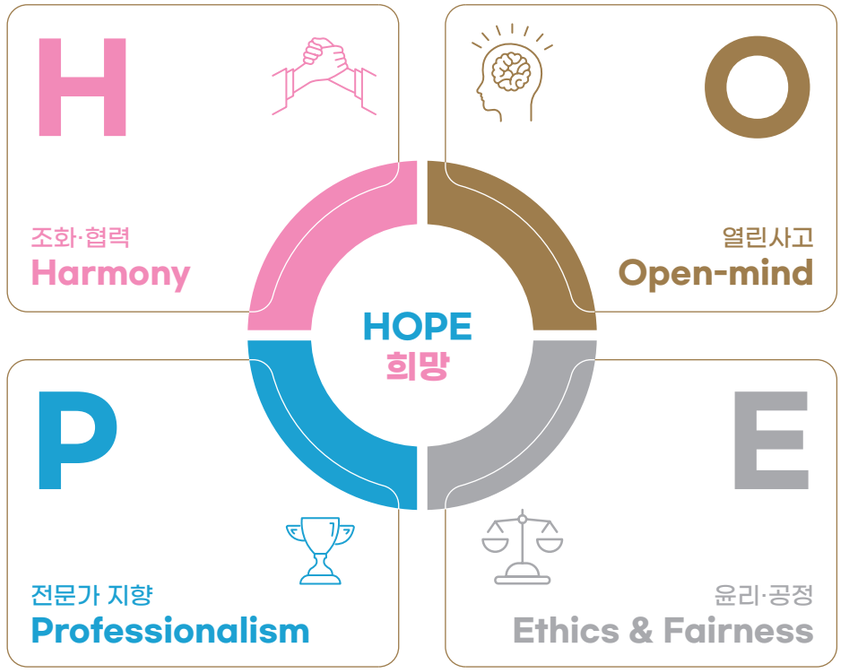

사업개요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공고일
예술인 신문고	• 권리침해행위와 성희롱 · 성폭력 피해 관련 신고· 상담 • 사후관리 및 피해지원 -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소송지원, 심리상담,의료비 지원, 기타 관련기관 연계	• 예술활동 관련 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 성폭력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 ※ 신고·상담은 예술계 종사하는 피해자, 대리인(개인 및 관련 단체 등) 모두 신청 가능	상시
예술인조합 신고 · 접수	• 예술인조합 결성 지원	•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 준비 중인 2인 이상의 예술인	상시
서면계약 위반신고	• 서면계약 위반 신고, 계약 상담	• 서면계약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상시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	• 전자계약체결서비스를 통하여 서면계약 체결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	상시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 계약, 저작권, 노동인권, 성평등 · 성폭력 예방 등 권리보호 교육 지원 - [단체] 찾아가는 교육 - [개인] 온라인 교육 - [개인] 계약의 이해 특강	• 현업· 예비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예술교육 기관 종사자 등 •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중·고·대학의 관련 부서(취업지원팀·학생 지원센터 등) 및 단과대학, 예술 관련 기관, 협·단체, 사업체 등	3월 - (온라인) 1월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 개인 심리상담 심리검사, 1:1 상담 (12회 한도) •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 비용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예술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종전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신청 가능 - 참여제한 : 재단 지원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집단 심리상담은 재단과 사전협의를 통해 신청 가능	2월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보험료 30~50% 지원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 사업자	2월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 가입 및 보험 사무대행 • 납부 보험료 50~90% 환급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상시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 온·오프라인 제도 안내 및 상담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사업장	상시
예술인 의료비 지원	•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일반질환 최대 100만원 지원)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2~3월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 예술인 자녀 대상 돌봄센터 2개소 운영	• 이 용 : 예술인 자녀(24개월~10세) • 운 영 : 화요일~일요일 (요일 운영시간 상이, 사전확인 필요) • 요 금 : 무료 • 위 치 : 대학로 소재(반디돌봄센터) 망원동 소재(예술인자녀돌봄센터)	상시
창작준비금지원 [창작디딤돌]	• 1인당 300만 원 지원(격년제)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참여제한 -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수혜자 - 2022년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수혜자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사업 참여 예술인	(상반기) 3월 (하반기) 8월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창작씨앗]	• 1인당 200만 원 지원(생애1회)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참여제한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수혜자	6월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로]	[리더예술인] - 예술로 협업사업 · 총 910만원(6.5개월) - 예술로 기획사업 · 총 840만원(6개월) [참여예술인] - 예술로 협업/기획사업 · 총 720만원(6개월) [지역문화재단] 운영기관별 예술인 활동비 및 사업운영비 지원	[예술로 협업/기획사업-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수혜자 [예술로 협업/기획사업-기업·기관] -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을 통해 이슈/고민을 해결하고 적극적 지원 및 협조가 가능한 기업·기관 [예술로 지역사업] - 시 · 도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광역단위 재단법인 문화재단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문화재단 제외	1~2월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 온라인 강의 제공 •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참여자 네트워킹 워크숍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3월(강의) 6월(멘토링 프로그램)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 생활안정자금대출(최대 700만 원) • 전세자금대출 (최대 1억 원)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유효기간 3개월 이상)	정기 상·하반기 2회

※ 연중 상시 사업의 경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됩니다.
※ 보다 정확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증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인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예술활동증명 세부 기준 및 지침: 58p 참고

< 코로나19 등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증명을 위한 산정 기간이 늘어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2020년부터 재난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2023년 신청 시 예술활동 실적인정 기간>

구분	최근 5년	최근 3년	최근 2년	최근 1년
실적 산정 기준 기간	2015년~신청일	2017년~신청일	2018년~신청일	2019년~신청일

신청자격

- 11개 예술분야(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방법별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예술활동 자료 제출을 통해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6조

진행절차

예술활동증명 기준 확인 → 자료 준비 → 신청 (온라인) → 행정심의 → 심의위원회 → 결과공지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재단

※ 신청인이 선택한 예술분야의 심의위원이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검토하오니, 예술분야를 신중하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회 운영**

- 문학, 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무용, 음악(일반, 대중음악), 국악, 연극, 영화, 연예(방송, 공연), 만화 총 15개 분과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심의 진행
- **심의위원회 결과 :** 심의완료 후 문자 및 전자우편으로 개별 결과 통보

증명 방법 및 제출자료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분야 및 기준별 자료를 제출합니다.

▶ 예술활동증명(일반)

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 출간 · 공연 · 전시 ·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에 참여한 실적 또는 저작물의 발행 실적이 있는 예술인

※ 공중송신은 방송 또는 저작물 유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발표(웹소설, 웹툰, 음원사이트, OTT 등), 지자체·방송 또는 저작물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공연·전시 등을 의미

-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 또는 저작물의 발표일시·장소, 성격, 주최·주관, 규모, 발표매체, 참여예술인 이름(예명 사용시 예명 확인자료),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공연·전시 포스터, 리플릿, 프로그램북, 도록, 도서, 앨범, 계약서 등)

※ 예술 분야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확인(별첨 참조)

예술활동증명

② 예술활동 수입

- 예술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등 수입이 있는 예술인
- 해당 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 또는 저작물의 발표일시·장소, 성격, 주최·주관, 규모, 발표매체, 참여예술인 이름(예명 사용시 예명 확인자료),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계좌정보(은행명·계좌번호·계좌주명), 입금정보(입금일자·입금액·입금자명) 자료 제출

③ 기준 외 활동

- 원로예술인(만70세 이상): 오랜 기간의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언론보도 내용, 공적, 기타 문화예술관련 공인된 활동 등)
- 경력단절예술인: 질병, 육아,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증빙자료 및 경력단절 전·후 활동에 대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
-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특수한 작업 방식에 대한 증빙자료 및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

※ 예술활동이 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②예술활동 수입 기준에 맞지 않지만 예술활동증명 절차 완료를 원하는 경우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정

④-1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보유자·전승교육사)

- 문화재청 및 (광역)시·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 문화재청 및 (광역)시·도에서 발급한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확인서류

④-2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이수자)

- 문화재청 및 (광역)시·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이수자
- 문화재청 및 (광역)시·도에서 발급한 이수자 확인서류,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 발표일시·장소, 성격, 주최·주관, 규모, 발표매체, 참여예술인 이름(예명 사용시 예명 확인자료),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포스터, 리플릿, 프로그램북, 계약서 등)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으로 최근 2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

▶ 예술활동증명 특례

⑥ 특례(산재보험 가입,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신문고)

- 산재보험 가입 특례: 예술활동 관련 서면계약서 사본 또는 예술활동 실적 자료
- 사회보험료 지원 및 예술인 신문고 특례: 예술활동 관련 서면계약서 사본

신청방법 및 결과안내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회원가입 필요)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www.kawf.kr)→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및 자료 안내
- **결과안내** 문자 및 전자우편 개별 안내

문의

- **예술활동증명팀** 02-3668-0200, www.kawf.kr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예술활동증명, 이렇게 활용하세요!

1.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시, 재직증명서로 활용

예술인 자녀(0세-5세)의 어린이집 입소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재직증명서를 대체합니다.
부모 취업여부 확인용 서류로 인정되어 우선입소 대상, 종일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행복주택 신청자격으로 활용

정부의 행복주택 신청자격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예술인패스로 다양한 혜택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은 신청시 모두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패스 발급받아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료 할인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2023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2

2023
예술인복지사업 상세안내

예술인 신문고	18
예술인조합 신고 접수	23
서면계약 위반신고	24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25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26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29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32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34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운영	37
예술인 의료비 지원	40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43
창작준비금지원 - 창작디딤돌 및 창작씨앗	44
예술인파견지원 - 예술로	46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52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53
예술인패스	57
[별첨] 예술활동증명 세부 기준 및 운영지침	58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고충처리 종합지원시스템(One-stop System)입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 신문고의 보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① 보호 대상 확대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 예술인 및 예비 예술인 • 예술인조합 • 예술 단체 • 신고인 및 보고·자료제출·출석·진술인

② 보호 범위 확대

구분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예술인 권리침해	• 불공정행위 (제6조의2 제1항)	• 예술 활동 성과 전파 방해행위(제7조제2항) •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차별행위(제8조제2항) •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제9조) • 불공정행위(제13조제1항) •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제14조제4항) • 불이익조치(제38조)
성희롱·성폭력 피해	•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제10호)	•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행위 (제16조제3항) •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행위(제16조제2항) • 불이익조치(제38조)

③ 예술인조합 신고 접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 준비 중인 2인 이상의 예술인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예술인 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1. 권리침해행위 신고·상담

■ 지원대상

예술활동 관련 예술인권리침해행위(「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조 제10호, 제38조)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

■ 지원내용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조치에 대한 지원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 예술 활동 성과 전파 방해행위(제7조제2항)
-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차별행위(제8조제2항)
-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제9조)
- 불공정행위(제13조제1항)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 · 지연 · 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 · 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제14조제4항)
- 불이익조치(제38조)

■ 지원절차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신고	신고접수 및 조사의뢰	사실조사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 심의, 분쟁조정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사후조치

* 신고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문의

권리보장팀 02-3668-0200, www.kawf.kr

2.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 지원대상

예술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어 피해 구제가 필요한 예술인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조 제2호 '예술인'에 해당하는 자)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 피해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지원
- 성희롱·성폭력 피해 회복 지원 (심리·법률 상담 및 소송· 의료비 지원 등)

성희롱·성폭력이란?

- **성희롱(「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8호)**

  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나.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9호)**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지원절차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보호관	▶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 문화체육 관광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고	피해신고 접수	피해사실 조사	신고사건 심의 및 의결	구제조치 및 시정명령	피해자 지원 (심리상담, 의료, 소송)

■ 피해회복 지원

구 분	내 용
법률 지원	•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와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 성폭력 피해 관련 민·형사 소송비용 (심급별 지원, 1인당 구조비용 최대 500만원)
심리상담 지원	• 성폭력 피해 예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의료 지원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비 직접 지원 (입원 치료에 한함)
관련 전문기관 연계	•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해바라기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 지원절차

업무내용	처리 기관	내용
신고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사실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신고내용 확인, 사실관계 조사, 자료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담당관이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 사실조사 실시 •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 또는 거짓자료 제출 시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부과)
심의·의결	예술인권리보장·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위원회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 심의/조치 내용 의결 및 요청 • 성희롱·성폭력 사건 심의/조치 내용 의결 및 요청
시정명령 등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통한 의결 사항 이행 - 시정권고, 수사의뢰, 행정처분, 소송지원 • 성희롱·성폭력 피해 -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통한 의결 사항 이행 - 시정권고, 수사의뢰, 행정처분, 소송지원 ※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원)

■ 문의

권리보장팀 02-3668-0200, www.kawf.kr

3. 법률 상담·컨설팅

■ 지원대상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 지원내용

- 예술계 특화된 컨설턴트 변호사 상담 제공(계약, 저작권, 기타 예술용역 계약 관련 분쟁 등)
- 법률상담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나 서면계약 위반과 관련될 경우 신고 창구 연계 지원
- 서면계약서 검토 및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 법률상담 지원

■ 지원절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컨설턴트 변호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상담요청자 (예술인 등)
예술활동 관련 법률상담 접수	상담 진행 (내용에 따라 대면상담 진행)	상담요청자에 답변전달 및 대면상담 예약 진행 (필요시 권리침해 신고 또는 서면계약 위반 신고 연계)	답변수령

■ 신고 및 상담방법

온라인	• 온 라 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권익보호 - 법률상담· 컨설팅 메뉴
	• 전자우편	sinmungo@kawf.kr
전 화	• 상담전화	02-3668-0200(방문 상담시 사전예약 필수)
	• 상담시간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12시~13시)
방 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담실(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 문의

권리보장팀 02-3668-0200, www.kawf.kr

예술인조합 신고 접수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예술인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 준비 중인 2인 이상의 예술인

■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을 준비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예술인권리보장법」 제14조 제1항 전단)

■ 작성내용

① 특정 예술 활동의 명칭
②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명칭
③ 예술인조합의 명칭
④ 송달 장소
⑤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⑥ 조합구성원의 수

■ 지원절차

처리절차(5일)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참고 사항: 신고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가능

■ 신청방법(택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 **신청** 권익보호→예술인조합→예술인조합 안내 →[결성신고서] 다운로드 후 작성 →예술인조합 신청 메뉴에서 신고서류 등록 • **처리내역 확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나의 활동 정보→상담·신고 내역→예술인조합 신청
전자우편 (artistunion@kawf.kr)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권익보호 → 예술인조합 → 예술인조합 안내 →[결성신고서] 다운로드 후 작성→전자우편으로 신고서류 제출

■ 문의

권리보장팀 02-3668-0200, www.kawf.kr

서면계약 위반신고

서면계약서 미작성 관행 등을 개선하여 건전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예술인의 예술활동 안정성 도모 및 서면 계약 체결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서면계약 위반 행위(「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신고·상담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지원내용

-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상담
-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확대를 위한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 서면계약서 검토 및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 법률상담 지원

■ 서면계약 위반 유형

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서면계약서 미작성에 해당
② 계약서 명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을 시 서면계약서 내용미비에 해당
③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서면계약서를 예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서면계약서 미교부에 해당
④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시 서면계약서 미보존에 해당

<서면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사항>

① 계약 금액
②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③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④ 업무·과업의 내용
⑤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⑥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진행절차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문화체육관광부 ▶	전문가 자문 ▶	문화체육관광부
신고	상담·안내 (필요시) 신고 접수	사실관계 조사 서면계약 위반 사항 조사	자문기구 (필요시)시정조치 자문	시정조치 서면계약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법 위반 행위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신고 및 상담방법

서면계약 상담	• 온 라 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권익보호-아래의 각 메뉴 - 서면계약 상담: 권익보호→ 예술인 신문고→ '서면계약 상담' 메뉴 • 전자우편 sinmungo@kawf.kr • 전　　화 02-3668-0200(방문 상담시 사전예약 필수)
서면계약 위반신고	• 온 라 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권익보호-아래의 각 메뉴 -서면계약 위반 신고: 권익보호→예술인 신문고→'서면계약 위반 신고' 메뉴 • 전자우편 sinmungo@kawf.kr • 전　　화 02-3668-0200(방문 상담시 사전예약 필수)

■ 문의

권리보장팀 02-3668-0200, www.kawf.kr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체결 문화를 정착시키고 서면계약 미작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계약서비스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4)

■ 지원대상

문화예술사업자(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지원내용

-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지원
  ※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모두싸인에서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 운영
-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모두싸인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전자우편 서명 요청 무제한, 카카오톡 알림 월 300회 등)

■ 사용기간

승인일로부터 12개월
(1회에 한하여 지원)

■ 신청방법

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휴신청서 작성(누리집 공지사항 참고)
② (주)모두싸인 회원가입(www.modusign.co.kr)
③ 사용승인 후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 까지)

■ 문의

권리보장팀 02-3668-0200, www.kawf.kr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예술계의 계약 문화 저변 확대와 성평등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예술인의 실무 대응능력을 높여 스스로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또한 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공정한 예술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현업·예비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
-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중·고·대학의 관련 부서(취업지원팀·학생지원센터 등) 및 단과대학, 예술 관련 기관, 협·단체, 사업체 등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1) 예술인을 위한 계약의 이해 특강

- **교육내용 :** 예술분야별 표준계약서 활용, 예술활동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법률적 지식, 사례 등
- **교육일정 :** 연 2회(상반기 5-6월, 하반기 10-11월) 예정

  ※ 상세일정, 신청방법 등은 개최 시기에 맞추어 재단 누리집 별도 공지

2)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 **교육과정 :** 계약, 저작권, 노동인권,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예술인권리보장 등
- **강　　사 :** 예술분야별 법률전문가, 저작권 전문가, 현장 전문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 **소요시간 :** 1회, 90~180분
- **지원내용 :** 강사 파견 및 강사료 지원, 교육 운영(대면, 실시간 비대면)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2023년 11월 30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재단 누리집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페이지에서 '찾아가는 교육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온라인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2023년 11월 30일까지 상시
- **신청방법 :** 재단 온라인교육 전용 누리집(kawf.edukocca.or.kr) 개인 회원가입 후 강좌 수강

강좌명	주요대상	내용	강의시간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등	1. 저작물과 저작권 2. 저작권의 내용 및 행사 3. 저작권 침해와 저작재산권 제한 4. 문화예술계약	120분 (총 4차시)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수어·문자 통역)	수어·문자 통역이 필요한 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등	1. 저작물과 저작권 2. 저작권의 내용 및 행사 3. 저작권 침해와 저작재산권 제한 4. 문화예술계약 5. 성폭력 예방 및 대책	150분 (총 5차시)

강좌명	주요대상	내용	강의시간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예술사업자 등	1. 서면계약의 정의와 서면계약 체결의 필요성 2.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3. 서면계약 위반 신고 처리절차 4.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안내	70분 (총 4차시)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활용의 이해	[출연·창작]	1. 공연예술 출연·창작 표준계약서 개요 2. 실연자가 알아야 할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3. 창작자가 알아야 할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4.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출연계약서의 활용 5.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창작계약서의 활용	각 200분 (각 5차시)
	[기술지원 근로·용역]	1.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요 2. 기술지원 근로자가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주요조항 3. 기술지원 용역계약자가 알아야 할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4.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표준근로계약서의 활용 5.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표준용역계약서의 활용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 예술인 · 예술사업자 · 예술지원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 직업적 권리의 보장 -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와 구제 절차 - 예술사업자/예술지원기관/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의무사항	차시당 15분 (총 8차시)
문화예술계 성평등 · 성폭력 예방교육	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	1.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 2. 문화예술계 성 차별적 구조와 성희롱·성폭력의 특성 3.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사례와 판례 4. 문화예술계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제도 5. 문화예술계 성평등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약속	110분 (총 5차시)

문의

권리보장팀 02-3668-0200, www.kawf.kr

■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현황

• 10개 분야 66종 보급

분 야	표준계약서
미술 (12종)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전속계약서(작가),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전시계약서, 전시기획계약서, 대관계약서, 모델계약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공동창작계약서
공예 (5종)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판매위탁계약서, 판매계약서,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대관계약서
공연예술 (5종)	공연예술출연계약서, 공연예술창작계약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공연예술 대관계약서
만화 (6종)	출판계약서, 전자책(e-Book)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저작재산권 위임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계약서
애니메이션 (4종)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대중문화 (6종)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2종-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가수)/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배우)),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2종-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방송 (6종)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영화 (8종)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4종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표준 각본 계약서/표준 각색 계약서), 영화상영 표준계약서(2종 -기본상영계약과 개별상영계약을 분리하는 방식(영화상영기본계약서·개별상영계약서)/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영화상영계약서)), 영화투자 표준계약서(영화 제작 및 투자, 수익 분배에 관한 계약서)
출판 (10종)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재산권 (4종)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예술활동 중 예술인의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및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전문기관 및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창작의욕을 높이고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원대상

- **개인 심리상담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중 예술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자
  ※ 기존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는 심리상담 지원 사업 참여 제한
- **집단 심리상담 :** 예술활동을 계획·진행 중인 협·단체
  ※ 집단 심리상담 신청은 재단에 사전문의

■ 지원내용

- **개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지원**
  - 1:1 심리상담(대면·비대면) 최대 12회 및 심리검사 지원(전국 40개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센터에서 진행)
    ※ 비대면 상담(전화, 화상) 진행 여부와 구체적 방법은 신청기관의 상담사와 협의하여 결정
    ※ 상담비용 외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지정기관으로 지급
- **집단 심리상담 :** 지원 프로그램 내용 참조

■ 지원 프로그램

구 분	프로그램		
심리검사	• 진단용 설문지 검사	• 성격 및 정서 검사	•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개인 심리상담	•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 대인관계, 부부·가족문제 • 경제문제	•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집단 심리상담	• 스트레스 대처훈련 •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 우울·불안·사회공포증 등 프로그램 • 부부·가족상담 프로그램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프로그램	
예방 및 위기개입	• 위기개입 상담 (자살위험, 성폭력 문제 등)	• 사후관리 집단상담 (스트레스 관리 등)	• 자살예방 교육 등 (생명지킴이 교육)

■ 문의

권리보장팀 02-3668-0200, www.kawf.kr

지원절차

개인심리상담	집단 심리상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접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전자우편 접수
일정 협의 및 예약 (지정 센터)	재단과 일정 및 프로그램 내용 협의
맞춤형 1:1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	맞춤형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
만족도 설문진행	만족도 설문진행

신청방법

- **지원기간 :** 신청접수일~2023년 12월까지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2023년 11월 30일까지(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개인 심리상담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권익보호–예술인 심리상담–심리상담 신청
    (개인정보수집, 심리상담 참여동의서 내용 숙지 및 동의 필수)
  - **집단 심리상담 :** 전자우편(counseling@kawf.kr)으로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참여동의서, 사전질문지

문의

권리보장팀 02-3668-0200, www.kawf.kr

2023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권역	기관명	전문가	주소	전화번호
수도권	광화문 마음공간심리상담센터	김현미·박윤아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4 경희궁의 아침3단지 오피스텔 211호	02-720-7127
	고은정심리상담센터 보듬과아우름	고은정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5 슬로우스퀘어 318호	02-2642-3375
	그랑조행복찾기심리상담센터	조현섭	서울 종로구 동숭길 64, 401호	010-6335-0391
	다움심리상담센터	이은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6 대정프라자 603호	02-2672-1377
	마음산책심리상담센터	조성민	서울 중구 퇴계로 32길 22 1층	02-821-5953
	새봄심리상담연구소	신영주	서울 마포구 독막로 295 삼부골든타워 1023호	010-3565-7294
	세인임상심리연구소	이기련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284 현대레이크빌 306호	02-6287-1275
	심리상담센터 마음안아주기	이혜정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61, 101동 827호(운현궁sk허브)	010-2765-2512
	심리상담소 턴	김수진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1 SK허브오피스텔 1동 11층 10호	02-512-2680
	심리상담연구소 함께	윤영·박희경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A동 408호	02-2104-6833
	MK내마음클리닉	김무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120 도곡동 인스토피아 708호	010-4321-4894
	이수심리상담센터	전진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 디오슈페리움 1차 B동 1706호	02-523-5283
	이화심리상담센터	전현민	서울 도봉구 노해로 65길 17 중앙빌딩 4층 402호	02-999-5232
	일과사랑 임상심리상담연구소	이명선	서울 강남구 언주로 30길 27 우성리빙텔 509호	02-6259-5975
	일랑심리상담센터	차성이	서울 마포구 백범로 202 마포KCC웰츠타워 426호	010-2830-3272
	임선영심리상담연구소	임선영	서울 양천구 목동로 293 현대41타워 3102호	02-6671-9090
	경인심리건강센터	이봉건	경기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52 네이버시티빌딩 201-1호	032-321-2841
	나무솔심리상담센터	정현옥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02번길 8 우성메디피아 709호	032-576-0030
	심클심리상담연구소	박 일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4번길 1, 3층	0507-1482-0916
	나온심리상담연구소	이소연	경기 안양시 안양판교로 20 신한데뷰오피스텔 1304호	031-422-3571
	로뎀심리학습상담센터	오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10 우림로데오스위트 514호	031-904-4569
	세움심리상담연구소	강은영	경기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882번길 107-32, 202호	031-202-3812
	심리상담센터 폭신폭신	조혜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로 255 디엠시티스카이뷰 오피스동 1709호	031-915-1456
	심리상담소 여지	예미숙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 515번길 61 송림메디컬프라자 8층 810호	010-8312-3714
	심리클리닉 아이진	김진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삼라마이다스빌 505호	010-4667-2327
	이든샘가족아동청소년상담소	손혜련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평촌아크로타워 A동 1211호	031-478-9958
강원권	심리상담센터 아낌	신정원	강원 춘천시 거두택지길8, 2층	033-263-1155
	춘천임상심리연구소	김은희	강원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528-12 온의한주아파트상가 솔3호	033-255-1533
충청권	그로잉마인드심리상담센터	최윤경	세종시 대평로 87, 태양빌딩 5층 504호	010-8410-9520
	박상규심리상담연구소	박상규	세종시 한누리대로 223 리베라아이누리 2층 204호	044-868-1002
	손애리심리연구소	손애리	대전 서구 둔산로 133, 현대아이텔 418호	010-4174-0060
	자유ON심리상담센터	송승훈	대전 서구 둔산중로 40, 둔산더리치빌 302호	042-485-4279
	학습&마음심리상담센터	이철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3길 3, 202호	041-558-3837
	휴심리상담소	고숙남	충북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 20번길 72, 203호	043-288-7057
경상권·전라권	마음그루심리상담센터	최이순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2008 예일빌딜 504호	010-5560-2632
	마음꽃심리상담연구소	이수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2길 41, 기전시티텔 804호	010-2581-0901
	라온혜윰힐링센터	백용매	경북 경산시 용성면 곡신길 11-5	053-853-7579
	사단법인 심리건강연구소	김석웅·최상희	광주 동구 남문로 734, 103동 206호	062-512-0039
	최영미마음상담센터	최영미	광주 북구 동문대로 111, 이상클리닉빌딩 4층	062-263-7942
제주권	내마음의펭귄 심리상담센터	김현정	제주시 연화중길 12-9, 301호	070-4213-8080

※ 심리상담 지정기관은 각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문화예술단체(사업자)와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를 지원하여 예술직업군의 사회보험 편입, 유지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인 복지처우를 개선합니다. 또한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여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를 정립해나갑니다.

지원대상

-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표준계약서(서면계약)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문화예술사업자**
  - 표준계약서(서면계약)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및 회사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표준계약(서면계약) 체결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를 선택하고 관련 서면계약서 자료를 첨부하면 한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서면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여부 확인 시 해당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30~50% 지원
- 프리랜서 예술인이 재단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 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최대 3개월)

지원범위

- **2022년 7월 ~ 2023년 6월 보험료 부과분**
  (전년도 3/4분기 ~ 당해년도 2/4분기 보험료 부과분)

진행절차

신청 접수				
개인 : 온라인 접수 **단체 :** 전자우편 접수	표준계약체결여부 또는 표준계약교육 이수여부 등 선정 심의	보험 납부내역 확인	지원대상여부 결과공지	지원금 지급

※ 신청 접수 이후 심의 및 지원까지 약 3개월 소요

제출서류

구 분	예술인(개인) 신청		단체(회사) 신청 (사업장가입자)
	프리랜서 예술인 (지역·임의가입자)	근로자인 예술인 (사업장가입자)	
공통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 최근 소득금액증명원↔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계약(교육) 확인서류	• 표준계약서(서면계약) 및 계약이행 확인자료 (입금내역 등) • 표준계약 교육 수료증 (*해당자)	• 표준계약서(서면계약) • 월별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 서류	미제출 (※ 재단에서 국민연금공단 통해 납부내역 확인)		• 월별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내역서
보험료 환급용 서류	• 통장사본		• 통장사본(회사, 예술인)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 **접수기간 :** 공고일(2월) ~ 2023년 8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방법**
  - **개인신청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단체신청(근로자인 예술인 및 사업장):** 전자우편(support@kawf.kr) 통해 제출
- **문　　의 :** 사회보험팀 02-3668-0200, www.kawf.kr

지원금 상한액

예술인 1인, 1개월 지원 기준

구 분	프리랜서 예술인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
	국민연금		
표준계약 체결 시	월 45,000원	근로자인 예술인, 사업주 각 27,140원 (월 54,280원/문화예술사업자 월 최대 50명 지원)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월 45,000원	미해당	
지원금 상한액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 기준 납부보험료 50% 지원	'23년 최저임금 월 2,010,580원 기준 납부보험료 30% 지원	

※ 지원금 상한액 기준

· 프리랜서 예술인: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동일기준

·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기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유사 기준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직업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부보험료의 50~90%를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자격

- (가입)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
- (보험료 지원)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산재보험 특례'와 산재보험 가입 동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산재보험 사무대행 :** 가입 및 정보변경, 해지 등 보험 사무대행 일체 (산재 보상청구 제외)
- **보험료 지원**
  - 등급별 납부 보험료 50% 지원
  - 신규가입자 납부 보험료 90% 지원 (1등급 선택 시 가입월로부터 6개월간 90% 지원)
- **산재 보상 관련 상담 :** 산재 보상 관련 일반 상담 및 전문 컨설턴트 연계 상담 지원
- **월 보험료 및 재단 지원금(실제 보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등급/월 보험료 선택 가능)**

등급 (2023)	월 보험료(원)		재단지원금(원)		기준보수액 (월)
	창작, 실연 등 (7.0/1000)	사업서비스업* (9.0/1000)	창작, 실연 등 (7.0/1000)	사업서비스업* (9.0/1000)	
1등급	16,380	21,060	14,740 (90%지원시) 8,190 (50%지원시)	18,950 (90%지원시) 10,530 (50%지원시)	2,340,860
2등급	19,650	25,270	9,820	12,630	2,808,380
3등급	22,930	29,480	11,460	14,740	3,275,900
4등급	26,200	33,690	13,100	16,840	3,743,420
5등급	29,470	37,890	14,730	18,940	4,210,950
6등급	32,740	42,100	16,370	21,050	4,678,470
7등급	36,020	46,310	18,010	23,150	5,145,990
8등급	39,290	50,520	19,640	25,260	5,613,510
9등급	42,560	54,720	21,280	27,360	6,081,030
10등급	45,830	58,930	22,910	29,460	6,548,550
11등급	49,110	63,140	24,550	31,570	7,016,070
12등급	52,380	67,350	26,190	33,670	7,483,590

※ 보험료율은 가입 시 작성한 업무 내용을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합니다.

지원절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보험 가입 신청 (재단을 사무대행 기관으로 지정하여 가입)**
  - 온라인 가입 신청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 wci.kawf.kr)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및 보험 가입 신청	가입 신청 서류 확인	근로복지공단 가입접수대행	제출 서류 및 업무내용 확인 후 공단 가입 승인	승인내역 통보	납부보험료 지원 및 사무대행 업무 수행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신청과 산재보험 가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음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 선택 후 예술활동 계약서 또는 실적자료 1건 이상 첨부, 약 2주 소요)
※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재단의 각종 사무대행 업무 및 보험료 미지원

- **산재 보상관련 상담 신청**
  -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한 신청(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산재청구-보상 관련 상담)

산재 발생 예술인	보상관련 상담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산재 신청	불승인 또는 특이사항 발생	산재청구 상담 불승인관련 상담 재심 관련 상담	일반 상담 업무 수행	전문 컨설턴트 연계 상담

  - 산재 청구는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신청
  - 불승인 또는 재심 관련 상담에 대해 필요 시 전문 컨설턴트(공인노무사) 연계 상담 지원

유의사항

-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등급)은 매년 1월말까지만 변경 가능하고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 산재보험 제도 운영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보험사무 대행 및 납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 복지지원 → 산재보험 또는 예술인 산재보험 (wci.kawf.kr) → 가입신청
- **제출서류 :** 통장사본(보험료 환급용)

문의

- **사회보험팀** 02-3668-0200, wci.kawf.kr
- **근로복지공단(제도운영, 산재보상)** 1588-0075
- **건강보험공단(보험료 수납, 자동이체)** 1577-1000

| 별첨

- 기준보수액(2023년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2,340,860	76,960	7등급	5,145,990	169,180
2등급	2,808,380	92,330	8등급	5,613,510	184,550
3등급	3,275,900	107,770	9등급	6,081,030	199,920
4등급	3,743,420	123,070	10등급	6,548,550	215,290
5등급	4,210,950	138,440	11등급	7,016,070	230,660
6등급	4,678,470	153,810	12등급	7,483,590	246,036

- **산재보험료율** (출퇴근 재해 요율 1.0/1000 포함)
  - **7.0/1,000** : 실연, 창작, 기술지원 예술인
  - **9.0/1,000** : 사업서비스업* 예술인

  * 공연 대리인, 큐레이터 등 업무 내용을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

- **월 보험료(예시)**
  - **1등급의 경우** : 2,340,860원 × 7.0 / 1,000 = 16,380원
  - **12등급의 경우** : 7,483,590원 × 7.0 / 1,000 = 52,380원

  * 1개월 기준 금액이며 월 중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청구됨

| 별첨2 산재보험 주요 혜택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른 치료비 상당액 지급
휴업급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 기간 중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1일당 평균 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경우 지급
간병급여	치료를 끝내고 장해상태가 매우 중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도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가입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하는 경우 지급
유족급여 및 장례비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는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

| 별첨3 재해발생 시 산재보상 청구 절차

- 재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진료소견서 포함)를 작성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로 신청 (청구문의: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 시 해당 예술활동 계약서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운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예술인'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예술활동 시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시행 '20.12.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창구를 운영합니다.

■ 지원안내

- **온라인 안내창구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내페이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kawf.kr > 예술인 고용보험)
  - 제도 소개 및 자주하는 질문, 안내 동영상 제공
  - 연중 상시 1:1 전자우편 상담
  -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계산기 운영 (23년~)
- **대면(유선) 안내창구 :** 02-3668-0200(안내창구 연결)
  - 상시 유선 상담
  -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 지원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내책자, 동영상 등 개발제작 및 배포**
- **신고대행 전문협력기관 운영 : 전국 17개 전문협력기관 운영**
  - 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납부 관련 등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사업장 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해당 업무 수행, 협력기관 변동 가능

■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특징

- **당연가입 제도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가입**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계약기간(노무제공기간)과 계약금액(보수)으로 가입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
- **이중취득 가능**
  - '근로자 고용보험 +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 예술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자격 이중취득 가능

■ 가입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
  - **가입제외 :** 예술인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수행을 위해 타인을 고용한 경우
  - **가입의무 :**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보험가입 관련 신고, 보험료 납부 의무
  - **소득기준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월평균소득(계약금/계약일수x30)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

※ (단기계약) 계약기간 1개월 미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의무 가입

※ (소득합산신고)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인 2개 이상의 계약 체결 시 소득합산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 가입 신청 가능

■ 보험료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금액(보수) × 0.75(필요경비 25% 공제) × 1.6%(보험료율)**
  -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8% 부담

  ※ 보험료율, 필요경비율은 제도 관련 고시사항에 따라 변동가능
- **보험료 책정 시 기준보수 80만원 적용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예술인은 적용하지 않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페이지 내 보험료 납입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료 계산기' 운영 중

보험급여

- **구직급여(실업급여)**
  - 내　　용 :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
  - 수급요건 :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가입
  - 지급수준 : 기초일액의 60% 수준 지급하며 상한액 일 66,000원(근로자 동일),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동안 지급
- **출산전후급여**
  - 내　　용 : 출산한 여성이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
  - 수급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전 3개월 이상 가입
  -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수준 지급하며 상한액 월 210만 원, 하한액 월 60만 원 (기준보수의 60%) 예정, 3개월 동안 지급

업무담당 기관

기 관	대 상	주요 업무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보험가입, 보험료 금액 문의, 보험료 지원 신청 시 • 예술인 소득을 합산하여 본인이 가입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가입, 보험료 금액 문의, 보험료 지원 신청 시 • 누리집 www.comwel.or.kr • 대표번호 1588-0075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주 보험료 고지서, 보험료 납부 문의 시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 누리집 www.nhis.or.kr • 대표번호 1577-1000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예술인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운영** • 가입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 사업주, 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필요시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운영** • 누리집 www.kawf.kr > 예술인 고용보험 • 문의번호 02-3668-0200(내선 0287, 0288)

문의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02-3668-0200(내선 0287, 0288), www.kawf.kr

별첨　고용보험 비교

	예술인 고용보험	근로자 고용보험
1. 가입대상		
포함	1개월 미만 단기계약 예술인 포함	일용근로자 포함
제외	50만원 소득 미만 (1개월 이상 계약 시) 65세 이후 신규	주 15시간 미만 / 65세 이후 신규
2. 보험가입		
취득신고	사업주 *소득을 합산하여 가입할 때는 예술인	사업주
가입기간(피보험자격)	문화예술용역 계약 기간	근로계약 기간
3. 보험료 납부 (월평균보수×보험료율)		
보수	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필요경비 (필요경비 25% 일률 공제)	근로소득-비과세소득
보험요율	실업급여 1.6%	실업급여 1.6%
보험료 부담 / 납부	예술인과 사업주 / 사업주	근로자와 사업주 / 사업주
4.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수급요건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사유	비자발적 이직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일부 인정	비자발적 이직
지급수준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 산정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평균임금 기준 산정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120~270일	120~270일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여부	수급기간 중 소득발생 시 일부 감액 혹은 전부 지급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일액 전부 감액
5.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지급내용	출산전후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6.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적용여부	미적용	적용

예술인 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예술활동으로의 복귀와 지속을 도와드리며,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신청자격

-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5% 이하인 예술인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 중 성인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5% 적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 소득(원)	1,766,208	2,937,731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3
년 소득(원)	21,194,498	35,252,771	45,235,123	55,089,833	64,573,018	73,725,396

지원내용

-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지원
  (1인 최대 300만 원 이내/중증질환이 아닌 일반질환 100만 원 이내)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불가
입원 및 수술비	• 입원, 수술 등 제반 비용	• 상급 병실료 ※ 병원 내부사정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 제증명료 • 보호자 식대 등
검사비	선정된 질환 관련으로 받는 MRI, CT 촬영 등 검사 비용	• 종합건강검진 등 단순 검사비
외래진료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약제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약제비 ※ 희귀의약품인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 한방첩약(↔일반과립 가능) • 질환과 관련 없는 약품(영양제 등)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간병비	• 해당질환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단, 병원 또는 회사에 소속된 전문 간병인 고용 시 지원) • 최대 3개월 200만원 이내 지원	• 재가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활 치료비	물리치료비, 침, 주사요법 등	도수치료

지원제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동일한 질환(질환명 또는 질병코드로 판단)으로 연속 2년 간 지원을 받은 경우
- 민간보험 수혜자로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
- 1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청구 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2월 ~ 5월(예정)
- **신청방법**
  - **전자우편접수 :** medic@kawf.kr (신청서 양식 누리집 참조)
  - **우편접수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 03088)
    *상세내용은 재단 누리집 내 사업공고 참고

제출서류 (변동가능)

구분	발급처	비고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재단 누리집(www.kawf.kr) 공고문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해당병원	질환명, 질환코드 기재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전 세목 모두 체크
보험가입조회서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별도 붙임파일 참조
보험 정관/약관	해당 보험사	신청자 가입정보 기재 (월 보험료, 기간, 보험 항목 등)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해당 병원	소급적용 받고자 하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차용증	해당 거래기관	해당자만 제출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행정검토	전문가 심의	선정 및 지원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해당병원

지원방식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 단, 긴급수술 및 치료* 등으로 인해 사업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 결재 완료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전까지 질환과 관련된 치료비에 대하여 소급지원 가능

* 긴급수술 및 치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사항만 인정(만성질환 제외)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을 회수 조치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결정 시, 신청 당시 기재한 질환에 대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문의

사회보험팀 02-3668-0200, www.kawf.kr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전문가 돌봄서비스, 연령 통합 돌봄을 제공하여 예술인이 육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용대상

24개월~10세 예술인 자녀

※ 단,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 12세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센터소개

구 분	반디돌봄센터	예술인자녀돌봄센터
특징	• 공연단체와 극장이 밀집해 있는 대학로 주택에 위치 • 유기농 재료로 만든 가정식 식사와 간식 제공	• 아이들이 집처럼 뛰어놀 수 있는 주택 • 유기농 재료로 만든 가정식 식사와 간식제공
위치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2길 19, 1층 (이화동 4-1)**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출구 도보 10분거리 • 버스 100, 109, 143, 150, 160, 273, 301, 710, 2112 통신대 하차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5-4(망원동 473-30)** •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5번출구 도보 2분거리 • 버스 7011, 271, 7733, 163, 601, 606 마포구청하차
시설규모	28평 (방2, 주방1, 화장실1)	54평 (방3, 주방1, 화장실2, 학부모 공간)
운영인력	센터장 1인, 돌봄교사 3인 교대근무	센터장 1인, 돌봄교사 3인 교대근무
운영시간	• (화~금) 13:00~22:00 ※ 월요일 휴무 • (토) 11:00~22:00, (일)11:00~20:00 • 단, 주말 9:00~11:00, 평일 및 토요일 22:00~23:00 돌봄 필요시 2일전 사전예약	• (화~일) 11:00~20:00 ※ 월요일 휴무 • 단, 09:00~11:00, 20:00~22:00 돌봄 필요시 2일전 사전 예약
프로그램	미술활동, 요리활동, 동화구연, 신체활동 등	영유아~아동의 자기주도적, 연령통합적 놀이프로그램 운영
전화	02-741-0347	02-3143-1919
온라인	http://cafe.daum.net/bandicare	http://cafe.naver.com/yebomcenter

이용방법

- 각 돌봄센터 문의 후 회원가입(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신청가능)
- 사전예약제로 운영 (하루 전까지 예약, 전일이 휴관일일 경우 2~3일 전 예약)
- 24~48개월의 유아는 전담인력 배정을 위해 1일전 예약 필수
- 긴급한 경우, 10~13세(초등학생)인 형제자매를 동반할 경우 사전 문의 필수

문의

- **반디돌봄센터(대학로)** 02-741-0347
- **예술인자녀돌봄센터(마포)** 02-3143-1919
- **사회보험팀** 02-3668-0200, www.kawf.kr

예술인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준비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2023년 창작디딤돌 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창작디딤돌 '최초 수혜 예술인'* 배점이 1점 ⇨ 2점으로 변경됩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창작준비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기존] 최초 수혜 '배점 1점' ▶ [개선] 최초 수혜 '배점 2점'

* 2015~2023년까지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원로 포함)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재단에서 확인합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창작디딤돌

사업명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소득인정액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월):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구분 / 1인 가구 금액 / 2,493,470원 ※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금액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 • 원로예술인(만 70세) 및 장애예술인: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 (배점제 미적용)
참여제한	• 2022년도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 • 2023년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사업 참여 예술인 • 재단 사업 참여제한 대상 예술인
지원규모	1인당 300만원(격년제)
지원인원	20,000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참고
※ 원로예술인: 만 70세 이상 예술인은 사업 신청시 '원로예술인'으로 분류되어 자격요건 충족 시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신진예술인 창작준비지원금 제외) 우선 선정 (배점제 미적용)
※ 장애예술인: 장애예술인은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 (배점제 미적용)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창작씨앗

사업명	2023년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사업대상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소득인정액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월):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구분 / 1인 가구 금액 / 2,493,470원 • 장애예술인 :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
참여제한	재단 사업 참여제한 대상 예술인
지원규모	1인당 200만원(생애 1회)
지원인원	3,000명

■ 진행절차

신청
• 예술활동증명 유효
• 신청서작성 및 제출

▶

심의
• 행정검토 • 소득인정액 조사
• 배점합산 • 전문심의

▶

발표
• 심의결과 개별공지
(문자,전자 우편, 창작준비금 시스템)

교부
• 통장사본 제출
• 창작준비금 교부

▶

제출
• 활동보고서 제출

▶

종료
• (승인) 사업 종료
• (활동보고서 미제출 또는 미승인) 재단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선정 방법

제출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

① 행정검토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② 전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③ 부문별 배점 합산을 통해 최종 선정

※ 배점 기준에 따른 점수 합산 후 동점자 발생 시 ㉠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 ㉡ 최초 수혜 예술인, ㉢ 농·어촌 지역 예술인순으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 배점기준표

부문	항목	배점	산정방법
소득분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기준 중위소득 30% 초과 60% 이하	7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90% 이하	6	
	기준 중위소득 90% 초과 120% 이하	5	
기타	최초 수혜 예술인 1)	2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농·어촌 지역 예술인 2)	1	주민등록등본 반영
세부사항	1) 2015년~2023년까지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재단에서 확인 2)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목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 본인 외 가구원의 개인정보는 미포함(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며 진위여부(문서확인번호)가 확인되는 건에 한하여 배점 부여 가능		
유의사항	• 추가배점(최초, 농·어촌)은 중복부여 가능하며 소득분위 배점과 합산하여 최대 11점 • 농·어촌 지역 예술인은 신청과 함께 신청인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 보완 또는 추가 제출 등은 불가		

■ 필수서류 및 신청방법(창작디딤돌 및 창작씨앗 공통)

• **확인서류(필수)**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확약 동의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내 동의란 체크)
• **제출서류(해당자)** : 농·어촌 지역 예술인 배점 → 등본 제출(신청인 외 가구원 개인정보 미포함)
• **신청방법** : 우편, 온라인 ※ 해당 사업 공고 시, 신청방법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문의

예술활동지원팀 02-3668-0200, www.kawf.kr

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예술인과 사회(기업 기관 등)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예술인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인의 직업 역량 및 예술영역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예술로 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예술인과 기업 · 기관의 원활한 협업활동을 위해 멘토가 함께 합니다.
기획 · 협업사업 전체 참여팀에 사업 전문가들이 멘토가 되어 협업과정 중 발생하는 갈등을 조율하고 좀 더 나은 협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참여자에게 가산점(2점)을 부여합니다.

3) 기획사업을 통해 다양한 실험적 시도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제 폐지 : 자유로운 주제로 기획사업을 꾸릴 수 있도록 제시 주제를 폐지합니다.
· 참여요건 완화
[기존] 최근 3년 이내 예술로 사업에서 함께 활동했던 구성원으로 과반 이상 구성된 팀
[개선] 최근 3년 이내 예술로 사업에서 함께 활동했던 구성원*으로 2명 이상 구성된 팀
*예술인만 해당되며, 기업·기관은 제외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1) 리더예술인 · 참여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단,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제외) ※ 참여제한 조건

구분	참여제한 조건
협업/기획/지역사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활동보고서 미제출자
협업/기획사업	- 예술로 사업 3년 이상 연속 참여자 (해당기간: 2020년~2022년)

2) 기업 · 기관

•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을 통해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 · 기관
• 예술협업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협조가 가능한 기업 · 기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필수

※ 지원신청 제한 기업 기관

-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 단,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가 공익을 목적(복지 · 보건의료 · 교육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 중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와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되는 경우 허용
- 학교 및 사회예술강사, 생활문화센터 강사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업 · 기관(단순교육 형태)
- 타 예술관련 지원사업(공공기금)에 예술인을 투입하려는 기업 · 기관
- 기업 · 기관 구성원의 고유업무 대행 또는 단순 업무지원을 예술인에 요구하는 기업 · 기관

예술로
협업사업

■ 사업내용

참여 주체별(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기업 · 기관) 심의를 통해 선정, 자율매칭 후 상호 협의된 협업주제에 따라 예술협업활동 추진

■ 진행절차

시기별 단계

구분	1월	2~4월			5~10월	11~12월
예술로 협업사업	사업 공고	기업·기관, 리더 · 참여 예술인모집	기업·기관, 리더 · 참여 예술인 선정 및 발표	기업·기관 - 리더 · 참여 예술인 매칭	예술협업활동 진행 리더예술인 4~10월 참여예술인 5~10월	결과보고 사업종료

■ 지원규모 및 내용

구분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지원규모	• 총 910만 원 - 사전활동기간(0.5개월): 70만 원(*세액공제 전) - 활동기간(6개월): 월 140만 원(*세액공제 전)	• 총 720만 원 - 활동기간(6개월): 월 120만 원 (*세액공제 전)
지원내용	• 예술협업활동 기회(매칭) 및 직업역량강화 직무교육 지원	• 예술협업활동 기회(매칭) 지원

■ 선정심의

1) 리더예술인 · 참여예술인

• 심의절차 : 1차 서류심의 및 2차 면접심의 후 기업 · 기관 매칭 완료자에 한해 최종 선정
※ 2차 심의(면접) 선정자에 한해 기업 · 기관 매칭 기회 부여
• 심의방법 :
- 1차 서류심의: 지원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따라 평가항목별 부합여부 배점심의
- 2차 면접심의: 서류심의 선정자를 대상으로 소통 및 문제해결능력, 기획 및 성과관리 또는 협업능력 등에 대한 종합심의
※ 2차 심의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심의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상세 심의기준 모집공고 참고

2) 기업 · 기관

• 심의절차 : 서류심의를 통해 우선매칭대상 기업 · 기관 선정 후 리더예술인과 매칭된 기업 · 기관에한해 최종 선정
• 심의방법 : 지원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기반하여 사업의 이해, 협업주제의 적절성 및 사업참여동기, 예술협업 역량 등에 대한 종합심의
※ 상세 심의기준 모집공고 참고

■ 활동내용

1) 리더예술인

예술인의 예술적 역량·경험과 기업·기관을 매개하여 예술적 개입방향을 설계하고 프로젝트를 기획 및 운영하는 역할

- 매칭된 기업·기관과 팀 내 참여예술인들과의 매개 역할 및 예술협업활동 조력, 개입(월 10일, 30시간 이상)
- 활동과정 공유를 위한 월 1회 활동보고서 및 연 1회 협업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참여예술인 개별 프로젝트 활동 성과관리 및 기록(도큐멘테이션, 아카이브 등)
- 재단이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매칭행사(만남의 광장), 간담회 등 행사 참여

2) 참여예술인

리더예술인과 함께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 매칭된 기업·기관과의 예술적 협업 제안 및 진행(월 10일, 30시간 이상)
- 활동과정 공유를 위한 월 1회 활동보고서 및 연 1회 협업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활동내용 기록(도큐멘테이션, 아카이브 등)
- 재단이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등 행사 참여

3) 기업·기관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과의 예술협업 프로젝트 운영

- 매칭된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과 예술적 협업 진행
- 예술인 월별 활동보고서 검토 확인 및 연 1회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예술협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부가적 지원(활동 공간, 제작비, 운영비, 부대 활동비 등)
- 재단이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소통모임 등 행사 참여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1) 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

- **제출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및 포트폴리오(지정양식) 각 1부**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처, 근로기간, 근로시간 등이 기재된 '근로/용역계약서' 제출
-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2) 기업·기관

- **제출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기업·기관 소개자료 각 1부
- **신청방법 :**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goartist.kawfartist.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제출

■ 문의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00, www.kawf.kr

예술로 기획사업

■ 사업내용

사전 기획된 협업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팀(기업·기관 및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단위 내 예술협업 활동 추진

■ 팀 구성 유의사항

- 예술로 사업에서 최근 3년(2020-2022년) 이내 함께 활동했던 구성원*으로 2인 이상 구성된 팀으로 아래 내용이 충족되어야 함.(*예술인만 해당되며, 기업·기관은 제외)

※ 유의사항
- 팀별 기업·기관 1곳, 리더예술인 1인 및 참여예술인 3인 이상~5인 이하 구성
- 팀별 2가지 이상 예술분야 혼합 구성 필수(예술분야는 예술활동증명 분야 구분에 따름)
- 팀 내 각 주체(기업·기관-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는 중복될 수 없음

■ 진행절차

시기별 단계

구분	1~3월	4월	5~10월	11~12월
예술로 기획사업	공고 및 모집	참여 팀 선정 및 발표	예술협업활동 진행 리더/참여예술인 5~10월 (총 6개월)	결과보고 사업종료

■ 지원규모 및 내용

구분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지원규모	• 총 840만원 - 활동기간(6개월) - 활동비 격월지급: 회당 280만원 (*세액공제 전)	• 총 720만원 - 활동기간(6개월) - 활동비 격월지급: 회당 240만원 (*세액공제 전)
지원내용	• 예술협업활동 기회 및 직업역량강화 직무교육 지원	• 예술협업활동 기회 지원

■ 선정심의

- **심의절차 :** 1차 서류심의 및 2차 PT·인터뷰 심의 후 최종 선정
- **심의방법**
- **1차 서류 심의:** 지원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종합검토를 통해 2차 심의 대상 팀 선정
- **2차 PT·인터뷰 심의:** 1차 심의 선정 팀을 대상으로 PT 및 심층 인터뷰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팀 선정

※ 2차 심의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심의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상세 심의기준 모집공고 참고

■ 활동내용

1) 리더예술인

예술인의 예술적 역량·경험과 기업·기관을 매개하여 예술적 개입방향을 설계하고 프로젝트를 기획 및 운영하는 역할

- 팀 내 참여예술인들이 수행하는 예술활동 조력, 개입(2개월 내 20일, 60시간 이상)
- 활동과정 공유를 위한 격월 팀 활동보고서 및 연 1회 개별 결과보고서 작성 · 제출
- 참여예술인 개별 프로젝트 활동 성과관리 및 기록(도큐멘테이션, 아카이브 등)
- 재단이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등 행사 참여

2) 참여예술인

리더예술인과 함께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 기업·기관과 예술적 협업 제안 및 진행(2개월 내 20일, 60시간 이상)
- 활동과정 공유를 위한 격월 팀 활동보고서 및 연 1회 개별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활동내용 기록(도큐멘테이션, 아카이브 등)
- 재단이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등 행사 참여

3) 기업·기관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과의 예술협업 프로젝트 운영

-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과 예술적 협업 진행
- 예술인 격월 팀 활동보고서 검토 확인 및 연 1회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예술협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부가적 지원(활동 공간, 제작비, 운영비, 부대 활동비 등)
- 재단이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소통모임 등 행사 참여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팀 별 리더예술인이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협업활동계획서, PT자료 각 1부
  ※ PT자료의 경우, 1차 심의 이후 2차 심의 대상 팀에 한하여 추가 제출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처, 근로기간, 근로시간 등이 기재된 '근로/용역계약서' 제출
- **신청방법 :**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goartist.kawfartist.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지원신청 전, 함께 참여하는 기업 · 기관의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 가입 및 신청서 작성 필수

■ 문의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00, www.kawf.kr

예술로 지역사업

■ 사업내용

심의를 통해 선정된 광역문화재단이 자율적으로 기업·기관 및 예술인 선정 후 예술협업활동 추진

■ 신청자격

시·도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광역단위 재단법인 지역문화재단
(단, 서울/경기/인천 광역문화재단은 제외)

■ 진행절차

시기별 단계			
구분	1월	2월~10월	11~12월
예술로 지역사업	광역문화재단 모집 공고 및 선정	[복지재단] - 운영기관 담당자 교육 및 보조금 교부(2월) - 사업진행 상황 점검/공유 및 모니터링 [광역재단] - 운영기관별 예술로 사업 추진(2~10월)	결과보고 사업종료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역예술인 약 470명 지원**
  ※ 심의를 통해 선정된 광역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
- **기관별 예술인 최소 20명 ~ 최대 70명 지원**
  ※ 운영기관별 예술인 활동비 및 사업운영비(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포함) 지원
- **선정 운영기관 담당자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컨설팅 지원**
  ※ 상세내용 모집공고 참고

■ 선정심의

- **심의절차 : 서류심의 진행**
- **심의방법 : 지원 신청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운영기관 선정**
  ※ 상세 심의기준 모집공고 참고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제출방법 : 공문을 통한 신청·접수**
  ※ 광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의 경우, 해당 광역문화재단을 통해 추후 확인해 주세요.

■ 문의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00, www.kawf.kr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신진예술인의 안정적 예술활동을 위한 기본역량 및 공공지원 접근성 제고에 요구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 **온라인 강의 :** 예비/신진/일반 예술인 누구나
- **멘토링 프로그램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진행절차

시기별 단계						
구분	3~5월	6월	7월	8~10월	11월	12월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	온라인 강의 운영 및 안내 ▶	신진예술인 모집 및 선정 ▶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및 조별 구성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 네트워킹 워크숍 및 결과보고 ▶	사업종료

■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온라인 강의 제공 - 문화기획의 개념과 기획서 쓰는 방법 및 사례 소개 - 예술지원에 대한 공공지원의 목적과 기능 및 예술가와 행정기관의 소통방법 교육 • 멘토링 프로그램 - 예술프로젝트 기획서 및 포트폴리오 작성 실습 및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참여자 네트워킹 워크숍 - 신진예술인의 예술활동 기획, 포트폴리오 관련 심층 질의 응답 및 향후 예술 활동 방향성 관련 의견 공유

■ 선정심의

- **심의절차**

공고 ▶ 행정검토 ▶ 서류심사 ▶ 결과발표

- **심의방법**

- 사업 이해도 및 참여의지, 내용 적합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한 종합심의
※ 상세 심의기준은 모집공고 참고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및 기획서 혹은 포트폴리오, 온라인 강의 이수증,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서
- **신청방법 :** 전자우편(afreshart@kawf.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00, www.kawf.kr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유효기간 3개월 이상)

■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대출**

- 대출한도는 최고 700만 원 이내이며 단, 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최고 500만 원 이내
- 이율 2.5% (2023년 1/4분기 기준), 연체이율 5.5% (대출금리에서 3% 가산)
- 상환기간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선택 가능)

대출유형	융자요건	신청기한
의료비	신청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요양 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산후 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 의료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대출금 승인 (대출 최소 금액: 50만원)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부모요양비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장례비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사망일로 부터 180일 이내
결혼자금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드는 비용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 일부터 180일 이내
긴급생활자금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금 필요 시점부터 180일 이내

• **전세자금대출**

- 대출한도는 최고 1억 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이내
- 이율 1.95% (2023년 1/4분기 기준), 연체이율 4.95%(대출금리에서 3% 가산)
- 상환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동일주택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대출유형	융자요건	신청기한
전세자금	• 전세자금에 대하여 대출 ※ 월세, 반전세 해당 없음(공공임대주택 제외) • 전세대출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독채), 다세대주택(↔다가구 안됨), 오피스텔(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에 한함. ※ 해당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대출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임차전용면적은 85m²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m²이하) • 입주기간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누리집 공고 확인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누리집 공고 확인

■ 신청방법

• **생활안정자금대출**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누리집(www.artloan.kr)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방문 신청

시기별 단계	내용	
사전준비	•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 대출 상품별 서류 확인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누리집	
▼		
대출신청	• 온라인 접수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누리집 • 방문 접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심사	① 기본 서류 확인 ② 조건 확인 ③ 우선순위 확인 등 ④ 한도 설정	
▼		
온라인금융교육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대출승인 통보일 포함 3일 이내 완료
▼		
약정서 체결 자동 이체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EB하나은행 혜화동 및 전국 지점으로 제출)	
▼		
대출금 지급		

• **전세자금대출**

- **사전신청 및 기본심사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누리집(www.artloan.kr) 및 KEB하나은행 혜화동 지점 방문
- **본 서류 접수 및 심사 :** 기본심사 통과자에 한해 본 서류 접수 및 심사 진행
- 권리조사 기관을 통한 대출 적격성 확인 절차 진행
- **대출금 지급절차**

사전신청 및 기본심사 (홈페이지) ▶ 본 서류 심사 ▶ 최종계약 ▶ 권리조사 ▼ 대출금 지급 ▼ 전세입주 ▶ 전입 후 재산세미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제출서류

• **생활안정자금대출**

대출유형	제출서류	공통서류
의료비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② 의료 비용 증명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② 주민등록등본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모요양비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② 요양시설 비용증명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례비	① 장례식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②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③ 말소자 초본 원본	
결혼자금	① 기혼자 : 혼인관계증명서 ② 미혼자 : 예식장계약서(예식장측 날인필수) 및 청첩장	
긴급생활자금	① 사실관계확인서 ② 융자추천서	

• **전세자금대출**

구분	제출 서류
기본신청서	① 전세자금대출 신청서(신분증 포함) ② 전세자금대출 제한요건 체크리스트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인적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 포함)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 관련 서류	① 부동산등기부 등본(제출용) ② 전유부 건축물대장(발급용)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재산세주택항목)

구분	제출 서류
임대차 계약 서류 (※ 공공임대 제외)	① 임대차 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포함)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③ 공제증서(중개사무실) ④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이상) ⑤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해당자만)
위임장	대출금지급위임장/포괄위임장
※ 공공임대 (해당자만)	① 권리침해유무확인서, 전환계약 관련 안내문 ②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사실서명확인서)

제한조건

구분	제한조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①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신용도판단정보 보유 및 연체(은행, 카드 등) 중인 사람 ②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③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 완납 후 신청 가능 ④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⑤ '긴급 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인 자
전세자금대출	• 공통 ①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신용도판단정보 보유 및 연체(은행, 카드 등) 중인 사람 ②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③ 생활안정자금대출 보유자 ※ 완납 후 신청 가능 ④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⑤ 임차전용면적은 85㎡ 초과(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초과)
	• 임차인(신청자) ① 유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② 전세물건(입주예정주택)에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자 ③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공동 임차인 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임대인 ① 법인(공공임대사업자는 가능) ② 외국인 및 해외거주 대한민국 국민 ③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자 ④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문의

예술인융자팀 02-3668-0238~9, www.artloan.kr

예술인패스

예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및 생활 속 공간 할인의 혜택을 드립니다.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발급절차

신청서 (온라인)	▶	확인	▶	발급 (모바일카드 발급)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자격증 첨부
※ 미술관, 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 재단 확인 후 모바일카드 발급

모바일카드 확인 및 이용하기

- 예술인패스 누리집 접속
  ※ PC 및 모바일 모두 접속 가능
- '발급확인' 페이지 선택 →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로그인
  ※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과 동일
- '모바일 카드' 발급 정보 확인→ 성명, 생년월일, 분야
- '모바일 카드' 화면 캡처→ 사진첩 저장 후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 사용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아이디가 여러 개인 경우 '모바일카드 미발급' 상태로 확인될 수 있음
- 아이디 및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가입된 아이디 조회 가능

※ PC, 모바일 환경의 따라 예술인패스카드 시안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혜택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및 생활 속 공간 할인 혜택 제공
- 매월 할인 혜택 정보 제공(이메일)

※ 상세한 할인 및 혜택 사항은 예술인패스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예술인패스 누리집 통해 발급신청
- 신청기간: 연중 상시

문의

예술인융자팀 02-3668-0200, www.kawf.kr
예술인패스 누리집 http://artpass.kawf.kr:9090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개정 2021. 3. 24. >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2조 관련)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은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아래 표의 2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나 세부 기준란의 2 이상의 목에 해당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아 해당 실적을 점수로 환산(예를 들어, 3년에 3편이 하한일 경우 3년에 1편의 실적이 있으면 1/3점으로 한다)하여, 그 환산점수의 합계가 1점 이상인 사람도 포함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문학	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5년 동안 1편(단편의 경우는 3편) 이상의 소설(동화, 청소년),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건축	가.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 개인전을 열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회(예술감독 등 기획자의 경우는 1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음악, 국악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내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3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아. 최근 3년 동안 3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무용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연극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영화	가.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5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호제7호에 따른 단편영화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5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연예(演藝)	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대본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사람 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만화	가.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 우에 한한다. 나.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만화 비평 발표의 경우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기술지원 인력의 경우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참여) 사.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문학	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단편소설(동화, 청소년소설)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건축	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예술감독 등 기획자는 제외한다)
음악, 국악	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1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 · 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2년 동안 음악 · 국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 ·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사. 최근 2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무용	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연극	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영화	가. 최근 2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1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1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연예(演藝)	가. 최근 2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패션쇼에 1회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만화	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고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한 실적이 있고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사람 라.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세부 기준
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비고 : 제1호의 만화란의 소득 및 제2호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보조금, 기부금, 상금 등을 포함하며, 강연료는 제외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24.>

예술 활동 증명에 유효기간 (제2조의3 관련)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표 1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문화예술 분야	구분	유효 기간
문학	별표 1 제1호 세부 기준란(이하 "세부기준란"이라 한다)의 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세부기준란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3년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건축	세부기준란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세부기준란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3년
음악, 국악	-	3년
무용	-	3년
연극	-	3년
영화	세부기준란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3년
	세부기준란 나목, 다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연예(演藝)	세부기준란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3년
	세부기준란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5년
만화		5년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효 기간
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인 사람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년
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사람	3년
다.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3년

3.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별첨]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 정 2014.12.19.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4호
개 정 2015. 5.28.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7호
개 정 2017. 3.16.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2호
개 정 2019.12.2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5호
개 정 2020.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6호
개 정 2021.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69호
개 정 2021. 12. 27.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3호
개 정 2022.12. 9.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이다.

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경력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의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상 규정된 분류에 맞지 않더라도 예술 활동임이 분명할 경우 심의를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④ 법상 예술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되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
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2장 신청

제3조(신청방법)

예술 활동 증명 신청방법에는 개별 신청과 문화예술 분야별 협회 및 단체(이하 "협·단체"라 한다)를 통한 신청이 있다.

제4조(협력 협·단체의 지정)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협·단체 중 엄격한 회원관리(가입 조건, 자격 심사 등)를 전제로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 협·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인격의 전문예술(인) 협·단체
2. 해당 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다수가 소속된 협·단체
3.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협력 협·단체에 대해 표본 검증, 민원 발생 시 검증 등 신뢰도 확인을 통해 협력 지속 여부를 결정하되, 최초 3년은 매년 협약을 갱신하며, 3년 연속 협약을 맺었을 경우 이후로는 3년 주기로 협약을 갱신한다.

③ 협력 협·단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이 정한다.

제5조(협력 협 · 단체를 통한 신청절차)

① 협력 협 · 단체는 신청을 희망하는 소속 회원의 경력을 시행규칙 별표 및 동 지침의 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재단에 제출한다.

② 재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에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점검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심의위원회

제6조(심의방법)

예술 활동 증명의 심의방법은 행정심의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행정심의는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제출된 서류 검토 및 실적 또는 소득 기준 부합여부를 결정한다.

2.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는 제1호에 따라 부합된 자료에 대해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체위원회로 운영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행정심의를 재단에 일임하고 행정심의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심의는 원칙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분과위원회는 3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전체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문학, 미술(일반),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등 15개로 한다.

제9조(전체위원회)

전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한다. 단,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복합 심의 등)

① 예술 활동 실적이 여러 문화예술 분야에 걸쳐 있어 복합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의 직업이 속하는 분야와 작품이 속하는 분야가 다를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분야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가 불확실하거나 기존 문화예술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가장 근접한 분야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특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특례의 경우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 1인과 재단 직원 1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4장 인정기준

제11조(예술 활동의 범위)

예술 활동은 국내와 해외에서의 예술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제12조(예술 활동의 기준)

어느 분야의 기준을 적용할지는 작품을 근거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무용수가 연극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을, 악기 연주자가 무용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무용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주로 연극계에서 활동하며 장치, 조명, 분장, 의상 등을 담당하는 무대미술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업 부분만을 모아 개인전을 열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에는 전시회가 없으므로 미술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기준 기간의 산정)

① '1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문학에서 2010년 5월 5일로 기록된 저작물의 경우 유효 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다)

② 기준 기간이 산정되는 시점은 저작물의 첫 공표일자로 한다. 단, 출연,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 중 저작물 공표 현장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인력의 경우 최종 공표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최근'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이 5년인 미술의 경우 예술 활동 증명 신청일자가 2014년 7월 1일이라면 '최근 5년'은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 후 같은조 제4항에 따라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해제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이나 같은법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같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 후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해제하기 전까지의 기간도 포함)은 기준 기간의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① '1편' 또는 '1곡'이란 독립된 작품을 말한다.

② '1권'이란 독립된 서적으로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단, 문학 분야 연속출판물의 경우 각각을 1권의 문학 작품집으로 본다.

③ '1장'이란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을 말하며 '음반'은 디지털 음원을 포함한다.

④ '1회'란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를 말한다.

⑤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⑥ 연극의 경우 동일한 작품이라도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2편"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⑦ 연예 분야 가목의 경우 16회 이상 고정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 이상"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⑧ 공동 창작의 경우 N분의 1 배점을 원칙으로 하며 주와 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하거나 같은법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예정된 발표, 전시, 공연 등의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예술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재난으로 인하여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및 해당 예술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이 지원하는 비대면 예술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비대면 예술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예술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선정 내역, 참여 확인서, 예술활동 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발표 매체의 기준)

① '문예지 등', '관련 잡지 등'이란 서적, 웹진 등으로 서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관련 매체'란 '관련 잡지 등'을 포함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첨단 매체들을 폭넓게 포함한다. 다만 블로그 등의 개인매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

①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이란 '스태프(제작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창조력과 숙련도를 전제로 하며 행위의 결과가 저작물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저작물 공표에 반영되어 의미 표출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는 경우를 망라한다.

② '상당한 정도'란 그것을 제외할 경우 작품에 적지 않은 손상이 갈 수 있고 또한 쉬운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지시에 의한 단순 제작이나 단순 운반, 단순 조작, 단순 진행, 행정지원 등 분명 필요하지만 창조력 발휘나 예술적 기여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스태프(제작진)'란 원래 연극, 영화, 방송 등에서 실연자 외에 제작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나 그 범위를 모든 공연, 영상, 전시 분야까지 확대하여 공연, 영상 분야의 실연자와 미술, 사진, 건축, 만화 분야의 창작자를 제외한 참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스태프 중 시행규칙 별표에 별도로 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각 분야별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기술지원 인력의 활동 분야는 전시(미술, 사진, 건축, 만화), 공연(음악,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영상(영화, 연예), 만화 제작 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⑥ 미술, 사진, 건축 분야 전시 기획 인력 중 '예술감독 등 기획자'란 전시를 주도적으로 총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기획 인력과 구분한다.

제17조(문학 분야 인정기준)

①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을 뜻한다.

② 문학 분야 범주로는 시(동시), 시조, 소설(동화, 청소년, 웹소설, 오디오북, 그림책), 희곡, 수필, 평론, 평전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번역 등이 있다.

③ 아동문학(동시, 동화)과 청소년문학의 경우 등단여부(신춘문예, 각종 문예지 신인상, 각종 아동문학상)와 순수 창작 저술 활동(출판, 발표)이 주가 되고 교양·사교육도서의 저술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결정하되, 교양·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는 순수 창작 활동으로 본다.(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는 제외한다)

④ '문예지 등'은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문학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연간 종합 문예지 및 장르별 문예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 된 문학전문 주간지, 지속적·주기적으로 문학 작품을 게재하는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연간 잡지 등을 말한다.

⑤ 공동 문학 작품집은 문예지 등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미술, 사진, 건축 분야 인정기준)

① '미술'은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로 공간 예술, 조형 예술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응용미술'은 실제적인 효용에 목적을 둔 미술로 도안, 장식 따위가 있다.

② 미술 분야 범주로는 그림,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디자인,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프랙탈 아트, 행위예술 등의 세부 장르와 미술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공공미술은 전시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사진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⑥ '건축'은 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요구와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예술 또는 그 기술을 뜻한다.

⑦ 건축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또는 설계),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⑧ 건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계는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고 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전통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음악, 국악 분야 인정기준)

① '음악'은 박자, 가락, 음성 따위를 갖가지 형식으로 조화하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며,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으로 서양 음악에 상대하여 우리의 전통 음악을 이르는 말이다.

② 음악, 국악 분야 범주로는 성악과 기악이 각각 또는 함께 이루는 여러 세부 장르들과 음악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가창, 연주, 지휘, 작사, 작곡, 편곡, 비평,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녹음, 믹싱, 마스터링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음악은 고전음악, 현대음악, 퓨전음악, 대중음악, 동요 등을 포함하며, 오페라는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④ 국악은 전통연희, 전통무용 등과 융합 공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연희나 전통무용은 연극, 무용 분야와 병합 가능하며, 창극(국극)의 경우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⑤ 오페라, 창극(국극)의 연출은 음악, 국악 공연의 일반 기술지원 인력과 달리 연극 분야의 연출과 동일한 직종으로 본다.

⑥ 대중음악의 경우 재즈클럽, 라이브 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공연이 가능한데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경우는 인정하나 유흥업소로 분류된 스탠드바, 밤무대 공연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⑦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⑧ 길거리 밴드나 직장 동아리 밴드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⑨ 반주 음악(MR)은 1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0조(무용 분야 인정기준)

① '무용'은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② 무용 분야 범주로는 한국무용(전통, 창작), 발레(전통, 창작), 현대무용, 실용무용(방송댄스), 스트리트 댄스 등의 세부 장르와 무용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안무, 비평, 기술지원(연출,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경연이나 축제의 성격이 있으나 참여 자체가 일정 수준을 전제로 초청받아야 가능할 경우 등은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연극 분야 인정기준)

① '연극'은 배우가 각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 주는 무대 예술이다.

② 연극 분야 범주로는 대사극, 음악극(오페라, 창극(국극), 뮤지컬), 무용극, 마당극, 거리극, 마임, 행위예술, 전통연희(판소리, 가면극, 인형극, 그림자극), 아동 · 청소년극, 교육연극 등의 세부 장르와 연극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극작,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안무,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학생 공연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작품 개발 차원의 낭독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교육연극의 경우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하되 해당 공연이 일정 정도의 예술적 성취를 이룬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22조(영화 분야 인정기준)

①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② 영화 분야 범주로는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세부 장르와 영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시나리오,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 · 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뮤직비디오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④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만화 분야 인정기준)

① '만화'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인터넷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으로 관련 매체에 공표된 창작물을 말한다.
② 만화 분야 범주로는 캐리커처, 카툰, 웹툰, 스토리만화(교양만화, 학습만화, 홍보만화 등) 등의 세부 장르와 만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제작 기술지원(스토리, 콘티, 펜터치, 데생, 컬러작업, 배경, 효과, 편집 등), 전시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제25조(소득 기준)

보조금 및 기부금은 해당 예술 활동의 완료를 전제로 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술인 개인에게 귀속된 액수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26조(원로 예술인 인정기준)

① '원로 예술인'이란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활동 기간, 경력(언론보도 내용, 수상실적, 주요 행사 초청 경력, 문화예술 관련 공적, 기타 문화예술 관련 공인된 활동 등) 등을 근거로 원로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원로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은 종신토록 유효하다.

제27조(경력단절 예술인 인정기준)

① '경력단절 예술인'이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시작한 이후 기준 기간 이상이 지났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준 기간 내 하한 기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며, 경력 단절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경력 단절 사유를 직접 기술하여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 또는 기술된 경력단절의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력단절의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경력단절의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경력단절 이전 활동에 대하여 예술활동 증명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의 사유가 이미 해소된 경우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의 실적을 합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서는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산정을 하지 않는다.
⑤ 심의위원회는 판정 시점에서 경력단절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예술인에 대하여서는 이후 경력단절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차기 판정 시점을 정하여야 한다.

제28조(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인정기준)

①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이란 작품 발표 주기가 유난히 길다거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여러 작품을 발표하는 등 작업 방식이 특수한 예술인을 말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자의 예술 활동 실적을 근거로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은 해당 분야의 기준을 따른다.

제29조(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에 대해서는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또는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도 예술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그 자격이 유지되는 한 예술활동 증명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제30조(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최소 1회) 자료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여러 분야 또는 목 간 복합 실적에 대한 인정기준)

① 여러 분야 또는 여러 목의 활동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술적 역량이 서로 연계되어 발휘된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하여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고 환산, 합산하여 1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5장 효력

제34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자격 유지를 위한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35조(허위자료 제출 시 효력)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은 무효이며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단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MEMO

발 행 일 2023년 2월
발 행 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 획 정책기획팀
주 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 2층
대표전화 02.3668.0200
누 리 집 www.kawf.kr
디 자 인 런런레이스